

瑞山市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 查 報 告 書

1. 審查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8. 8. 20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8. 8. 21
- 라. 上程日字 : 1998. 8. 28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保健課長 柳榮東)

가. 提案理由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('96.7.1)되어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상의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나. 主要骨子

-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중에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및 제6조를, 지역보건법 제2조, 제7조, 제10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개정
- 동조례 제3조중 법 제6조를 법 제9조로, 동조례 제6조중 법 제8조를 법 제14조로 개정토록 함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- 본 개정조례(안)은 현행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에 제정 근거가 되는 법령 명칭과 조항이 개정되어 관계 법령과 불일치하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개정조례(안)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생략

5. 討 論 : 없었음.

6. 少數意見 : 없었음.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9 호
의결 년 월 일	1998. 9. 7. (제 호)

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8. 8. 20

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8년 8월 20일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('96. 7. 1)되어 서산시보건소 설치조례상의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,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2조, 제7조, 제10조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개정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지역보건법 제2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4조,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
- 나. 연간 추가 소요예산 : 변동없음
- 다. 관련사업계획 : 없음
- 라. 기타 참고사항 : 없음

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보건소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제4조, 보건소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”을 “지역보건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, 제7조, 제10조 및 제14조,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법 제6조”를 “법 제9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법 제8조”를 “법 제14조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산시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<u>보건소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제4조, 보건소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</u>에 의거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 <u>지역보건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, 제7조, 제10조 및 제14조,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</u> ----- -----</p>
<p>제3조(관장업무) ①보건소는 <u>법 제6조</u>에 규정 한 업무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1~9.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관장업무) ①----- <u>법 제9조</u> ----- -----</p> <p>1~9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증명발급 수수료 등) ①<u>법 제8조</u>의 규정 에 의한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.</p>	<p>제6조(증명발급 수수료 등) ①<u>법 제14조</u>----- -----</p>